종전개정 ▢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○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- ➊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- ➋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･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(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) ▢ 투자･근무인원 요건 규정 ○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(좌 동) - ➌ 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+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∙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구분 판단기준 투자 금액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근무 인원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 ＊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\* 2022.12.31.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